# 세입 · 세출 결산 총괄 설명

## 1.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(공기업포함)의 결산총괄은

❍ 예산현액 6,381,330,286,729원(전년도 이월금 87,386,604,729원 포함)에 대하여
**수납액은 6,485,736,865,735원**이고
**지출액은 6,122,050,163,475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363,686,702,2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**잉여금 총액 363,686,702,260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

- 명시이월 113,132,685,970원(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,283,000,000원)
- 사고이월 26,190,636,920원(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1,748,000,000원)
-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,090,868,93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  이를 공제한 **순세계잉여금은 223,272,510,435원**이다.

## 2. 2012년도 일반회계는

❍ 예산현액 5,646,284,218,729원(전년도 이월금85,491,497,729원 포함)에 대하여

**수납액은 5,723,656,059,730원**이고

**지출액은 5,442,670,987,359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280,985,072,37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**잉여금 총액 280,985,072,371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

- 명시이월 113,132,685,970원(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,283,000,000원)
- 사고이월 25,960,926,920원(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1,748,000,000원)
-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891,285,0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  이를 공제한 **순세계잉여금은 141,000,174,416원**이다.

## 3.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

### 가. 총괄결산상황은

❍ 예산현액 735,046,068,000원(전년도 이월금 1,895,107,000원 포함)에 대하여

**수납액은 762,080,806,005원**이고

**지출액은 679,379,176,116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82,701,629,88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**잉여금 총액 82,701,629,889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

- 사고이월 229,710,000원
-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99,583,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**순세계잉여금은 82,272,336,019원**이다.

## 나.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

❍ 예산현액 391,112,172,000원(전년도 이월금 1,895,107,000원 포함)에 대하여

**수납액은 388,922,400,910원**이고

**지출액은 367,745,539,030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21,176,861,8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**잉여금 총액 21,176,861,880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

- 사고이월 229,710,000원
-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99,583,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**순세계잉여금은 20,747,568,010원**이다.

다.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

**1) 대학교운영특별회계는**

❍ 예산현액 11,591,187,000원(전년도 이월금 1,895,107,000원 포함)에 대하여

**수납액은 11,611,782,300원**이고

**지출액은 11,139,651,810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472,130,4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**잉여금 총액 472,130,490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

• 사고이월 229,710,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**순세계잉여금은 242,420,490원**이다.

## 2)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는

❍ 예산현액 167,243,000원에 대하여

**수납액은 185,620,570원**이고

**지출액은 165,792,700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19,827,8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**잉여금총액 19,827,870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

•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,450,3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**순세계잉여금은 18,377,570원**이다.

### 3)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는

❍ 예산현액 342,678,055,000원에 대하여

**수납액은 340,183,966,400원**이고

**지출액은 328,975,699,540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11,208,266,8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**잉여금 총액 11,208,266,860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

•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98,133,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**순세계잉여금은 11,010,133,290원**이다.

### 4)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

❍ 예산현액 33,443,090,000원에 대하여

수납액은 33,520,844,240원이고

지출액은 25,107,457,000원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8,413,387,2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잉여금 총액 8,413,387,2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이월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

순세계잉여금은 8,413,387,240원이다.

### 5)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

❍ 예산현액 867,597,000원에 대하여

수납액은 879,825,260원이고

지출액은 0원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879,825,2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잉여금 총액 879,825,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이월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

순세계잉여금은 879,825,260원이다.

## 6)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특별회계는

❍ 예산현액 2,365,000,000원에 대하여

**수납액은 2,540,362,140원**이고

**지출액은 2,356,937,980원**이며

❍ 그 차인잔액은 183,424,1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으므로

**잉여금 총액 183,424,160원**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❍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이월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

**순세계잉여금은 183,424,160원**이다.

라.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(별책), 1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(단위:원)

| 회 계 명 | 예산현액 | 세 입 결 산 액 | 세 출 결 산 액 | 이 월 액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계 | 명시이월 | 사고이월 | 계 속 비 이 월 | 보 조 금 집행잔액 | 순세계잉여금 |
| 계 | 343,933,896,000 | 373,158,405,095 | 311,633,637,086 | 61,524,768,009 | 0 | 0 | 0 | 0 | 61,524,768,009 |
|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| 343,933,896,000 | 373,158,405,095 | 311,633,637,086 | 61,524,768,009 | 0 | 0 | 0 | 0 | 61,524,768,009 |

4.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.